##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18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소병훈·정준호·정성호

조계원 • 이개호 • 박희승

이수진 · 안태준 · 김기표

이원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, 이러한 금지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로 인 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,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어촌 · 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촌 · 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제60조제2항제4호 중 "제8호까지"를 "제7호까지 및 제9호"로 한다. 제6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45조제8호를 위반하여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금지행위) 누구든지 정당	제45조(금지행위)
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	
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	
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	
는 아니 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8.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
	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제60조(벌칙) ① (생 략)	제60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	
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	
에 처한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	4
호부터 <u>제8호까지</u> 의 규정에	<u>제7호까지 및 제9호</u>
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	
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	
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	
지 아니한 자	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62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62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~ 3. (생 략)
<u>&lt;신 설&gt;</u>

③ • 4 (생 략	• (	• (4	) (	[생	략
------------	-----	------	-----	----	---
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제45조제8호를 위반하여 취
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
③・④ (현행과 같음)